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인증받으려는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다만, 종업원을”을 “다만, 영업 개시일 또는 인증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료할 수 있으며, 종업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을 각각 “법 제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를 “사항 중 중요관리점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서

2. 중요관리점 또는 영업장 소재지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8항”을 “법 제9조제10항”으로,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를 “영업자,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 교육훈련 :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영업 개시일 또는 인증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료할 것. 다만,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경우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가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2. 정기 교육훈련: 매년 1회(인증연도의 차기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제1호의 신규 교육훈련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5제1항 중 “13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0일”을 “60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5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제7조의5제4항제2호 중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관은 검사 신청인이 도축 의뢰자에 대한 발급에 동의한 경우 도축 의뢰인에게도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7) 중 “별표 2의3”을 “별표 2의4”로 하며,

별표 10 제3호가목(7)(가)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를 “2개소 이상의 축산물 가공업을 허가 받아”로 하고, 같은 2)가) 및 나)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별표 10 제8호가목(4)를 (5)로 한다.

5) 같은 영업자,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또는 영업자의 계열회사(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약사법」 제31조제1항·제4항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영업 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에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갖추고 검사를 하려는 경우

별표 10 제8호나목(1)(아) 중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식

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경우 부산물을 세척·절단·포장 등 처리하거나 밀봉되지 않은 부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8호나목(2)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산물을 세척·절단·포장 등 처리하거나 밀봉되지 않은 부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과 별지 제1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품종)	성별	연령	생체량	총수량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도축 의뢰인 대상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입소의 경우	수출국가명			검역계류장 도착일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작성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성요령
①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적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중 해당되는 사항을 ()안에 함께 적습니다.
② 물량(kg)은 구입한 무게를 적으며 닭·오리의 경우 마릿수(마리당 무게포함)로 적을 수 있습니다.
③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수입의 경우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습니다.
④ 부위 명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⑤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 대상 식육의 부위에 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육질등급(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등)을 적고,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괄호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적습니다.
⑥ 이력번호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⑦ 매입처는 해당 판매업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고,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⑧ 식용하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거래연월일, 식육의 종류·물량·도축장명·원산지·매입처를 적습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

업소

농장

작업장

업소

농장

(HACCP)

인증

인증연장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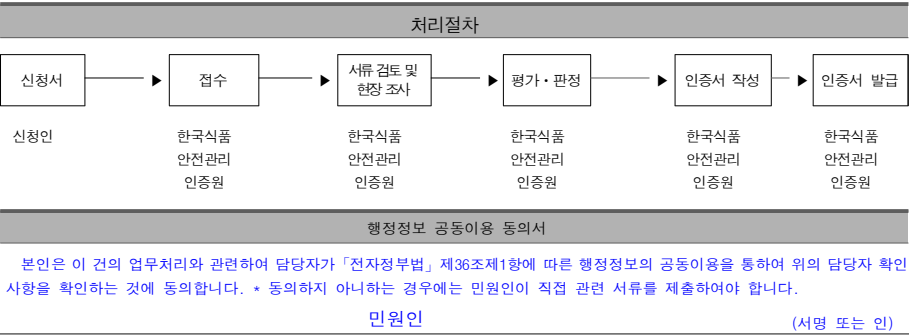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증: 60일 인증연장: 120일
------	-----	------	-----------------------

신청인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등록) 년 월 일	
	작업장(업소·농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 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HACCP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3항
(([] 작업장 [] 업소 [] 농장)으로 (([] 인증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 신청의 경우	가. 인증받으려는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나.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담당자 확인사항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농업인이 인증 또는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

인증연장

인증

인증연장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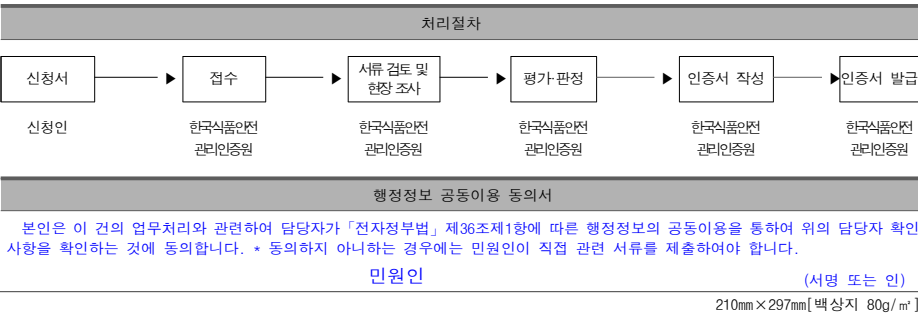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인증: 120일 인증연장: 120일
------	------	------	------------------------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통합인증 대상 작업장·업소·농장	[] 농장 (개소)		
		[] 도축업 (개소)		
		[] 집유업 (개소)		
		[] 축산물가공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총 개소)		
		[] 식용란선별포장업 (개소)		
		[] 식육포장처리업 (개소)		
		[] 축산물판매업 (개소)		
		[] 축산물운반업 (개소)		
	HACCP 적용품목 또는 가공품의 유형	[] 축산물보관업 (개소)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4항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 인증 []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다.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마.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인증서 사본 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정하는 수수료
담당자 확인사항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통합인증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안전관리인증업소
[] 안전관리인증농장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HACCP) 인증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등록) 연월일
	작업장(업소·농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장 소재지 (행정구역상 지번의 변경은 제외)			
중요관리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8항에 따라 []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안전관리인증업소 [] 안전관리인증농장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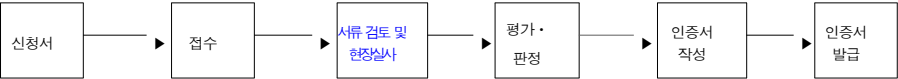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인증서 1부 2. 중요관리점 또는 영업장 소재지의 변경 내용 설명서 1부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	--	---

처리절차



신청인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	---------------------	---------------------	---------------------	---------------------

제 호

도축검사증명서

1. 가축의 종류:
2. 두수 및 이력번호(소·돼지·닭·오리만 해당합니다):
※ 세부 이력번호는 뒷장에 별도 표기 가능
3. 중 량: 지육 kg, 내장 등 기타 kg
4. 작 업 장 명:
5. 검 인 번 호:
6. 도 축 일: 년 월 일
7. 도축 의뢰인: 주 소
성 명
8.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여, []부
9. 수입소의 경우
- 수출국가명:
-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 여부:
10.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폐기(kg), 식용 외의 용도전환(kg)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관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수의사 면허번호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u>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u>법 제9조제4항--</u> ----- ----- ----- ----- ----- ---- <u>인증받으려는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u> ----- ----- ----- ----- ----- ----- ----- <u><삭 제></u>
1. <u>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의 영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u>	
2. 그 밖의 경우: 인증받으려는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u>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u>	<u><삭 제></u>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	② -----

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현행과 같음)
2. 안전관리인증기준-----

<삭제>

③ 법 제9조제5항 -----

-----.

1. ~ 3. (생략)

④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4. (생략)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⑥·⑦ (생략)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조제5항 -----

-----.

1. ~ 5. (현행과 같음)
- ⑤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⑥·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조제6항 -----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
다)로 인증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
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
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
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
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신 설>

<신 설>

⑨·⑩ (생 략)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
련)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자
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
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
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

----- 사항 중 중요관리점 또
는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
용업소 인증서 또는 안전관리통
합인증업체 인증서
2. 중요관리점 또는 영업장 소재지
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⑨·⑩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
련) ① 법 제9조제10항-----
----- 영업자, 안전관리인증
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신 설>

1. 정기 교육훈련: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인증받은 날부터 기
산한다)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 교육훈
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
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설>

및 -----

-----.

1. 신규 교육훈련 : 법 제9조의5제
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
련을 영업 개시일 또는 인증 받
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료
할 것. 다만, 통합인증에 참여하
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
의 경우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
원 모두가 교육훈련을 수료하여
야 한다.

2. 정기 교육훈련: 매년 1회(인증
연도의 차기 연도를 기준으로 한
다)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
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1호의 신규 교육훈련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
작업장등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u>130일</u> 전까	----- <u>90일</u> -----
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	③ -----
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	-----
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	-----
기간이 만료되기 <u>120일</u> 전까지 별	----- <u>60일</u> -----
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	-----
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	-----
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	-----
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 다만, 신청인이 축
	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업인
	인 경우에는 인증원장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	1.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
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본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입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	④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
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u>120일</u> 전	----- <u>60일</u> -----
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	-----
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	-----
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	-----
야 한다.	-----.
	-----. 다만, 통합인증에 축산

1. (생 략) 2.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u>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3.·4. (생 략) ⑤·⑥ (생 략)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 ③ (생 략)	<u>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업인이 참여하는 경우 인증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현행과 같음) 2. ----- ----- <u>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u> 3.·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검사관은 검사 신청인이 도축 의뢰자에 대한 발급에 동의한 경우 도축 의뢰인에게도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u>
--	---